

2016년도 자체 행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사무국 총무과, 2017.03.>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12. 12. ~ 12. 15.
- 감사범위 : 2015. 11. 1. ~ 2016. 10. 31.까지 대학운영 업무 전반
- 감사대상 부서 : 4개 대학원, 5개 단과대학, 6개 부속기관

II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및 처분결과

연번	지적사항	건수	처분
1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관리 부적정	1	개선
2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	주의 및 개선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3	통보
4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안전 확보 미흡	3	통보
5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운영 부적정	1	주의
6	국내여비 중복 지급	1	주의 및 시정(회수)
7	일상감사 미 실시	2	주의 및 통보
8	장학생 선발 부적정	2	통보
9	결강에 따른 보강이행 부적절 및 보강 미 실시	1	경고
10	수업관리 부적정	1	경고
11	공무원 여비 청구 부적정	1	주의 및 시정(회수)
12	부서운영비(과 운영비) 관리·운영 부적정	2	통보
13	출장에 따른 수업관리 부적정	1	경고
14	출장에 따른 수업관리 부적정	1	경고
15	소액수의 견적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1	통보
계		22	

□ 지적사항 세부내용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1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관리 부적정	<p>○ 「국고금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p> <p>- ○○○부서에서는 분석에 따른 사용료 총 538건 201,091,335원의 거래건 중 525건 192,276,345원에 대하여 최소 1일~최대 42일까지 기자재 분석료 출납 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음</p>	개선
2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p>○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24조,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예산 편성·집행 기준(교육부, 2014)」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상적 경비의 지급 가능액은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 기본급의 100%까지로 하며 기관별 연간 지급 한도의 산출은 초과수입 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 발간비·강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p> <p>- ○○○부서에서는 △△△ 4명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지급 한도액 7,778,640원을 초과한 인센티브 15,19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주의 및 개선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p>○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업무 추진비(240목) 및 한국교통대학교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p>	통보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p>○ 또한,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 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p> <p>(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p> <p>(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p> <p>(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p> <p>- ○○○ 등 7개 부서는 감사기간 중(2015.11월 ~2016.10월)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하여 총 17건 16,720,000원을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및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건에 대하여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등의 사실이 있음</p>	
4	<p>대학생 집단연수 운영시 안전 확보 미흡</p>	<p>○ 교육부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및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 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시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 운행을 위한 입찰 및 계약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차량·운전자 안전정보(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p> <p>- ○○○ 외 2개 부서에서는 총 7건에 대해 대학 및 학생 행사 등을 위한 차량 임차 계약 시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p>	<p>통보</p>
5	<p>대학회계 수입대체 경비 운영 부적정</p>	<p>○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016학년도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칙」 제6조 및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출 예산 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p>	<p>주의</p>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p>○ 예산 집행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p> <p>- ○○○부서에서는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함에 있어 2015회계년도 결산서상 불용액이 192,869,07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6회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월액을 182,440,000원으로 예상하여 예산 현액을 634,44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2016회계년도 본예산 및 2015회계년도 결산 확정 후 결산 차액에 따른 10,429,070원을 성립 전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16년 12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재무과로 성립 전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요구하지 않아 예산의 적기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p>	
6	국내여비 중복 지급	<p>○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 출장 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후에 제출된 증거 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p> <p>- ○○○부서 △△△의 출장기간이 중복되었음에도 출장 후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각각 산정하여 75,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주의 및 시정(회수)
7	일상감사 미실시	<p>○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한국교통대학교 일상감사 지침」에 따르면 주요 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일상감사를 사전에 감사담당부서(총무과)에 의뢰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분야 및 감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으나,</p>	주의 및 통보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업무(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부서 외 1개 부서는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감사담당부서(총무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8	장학생 선발 부적정	<p>○ 한국교통대학교 「장학규정」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으로, 같은 규정 제11조에 ‘단과대학장은 장학위원회에서 배정된 장학생수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고 총장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p> <p>○ 또한, ○○대학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지침과 △△대학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지침(충주대학교 장학금 관리지침 통보(학생과-3240호(2011.10.13.)))에 각 단과대학은 학장과 학과(부)장을 위원, 행정실장을 간사로 하는 장학위원회를 두고(제3조) 학업 성적 70%와 자율점수 3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학과의 학년별 성적순으로 장학생을 선정(제7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장학생 선정지침을 제정 및 개정(제4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통보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장 ◇◇◇은 학사운영규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결강에 따른 대강 또는 보강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0	수업관리 부적정	<p>○ 학사운영규정 제68조(휴·결강과 강의시간 변경) 제1항에 따르면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출장, 연가, 결근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은 사전에 강의시간 변경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해당 학기에 보강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 따라 학장은 보강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교수 ○○○는 2015-2학기 결강된 2과목에 대한 수업을 공무국외여행 기간 중에 보강을 실시한 것으로 강의실적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경고
11	공무원 여비 청구 부적정	<p>○ 「공무원 여비 규정(2016.11.29)」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2015.1.23.)」에 공무원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출장명령을 내고 그 실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교수 △△△ 외 4명은 학과의 사은회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내고 출장 후 행정실에 여비를 청구하여 개인별로 20천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주의 및 시정(회수)
12	부서운영비 (과 운영비) 관리·운영 부적정	<p>○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부서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하여 정액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의 집행 시에도 반드시 일반적인 예산집행 기준 및 원칙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p>	통보

연번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처분
15	소액수의 견적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p> <p>- □□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1, 2학기 대학회계 실험실습재료 구매 등 총 2건의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별도의 가격 조사(견적서 등) 없이 학과에서 제출한 물품 구입요구서 상의 총 합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p>	통보